

#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82
----------	------

2025. 12. 04.  
총무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11. 1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5. 12. 04.) 상정,  
“수정의결”

## 2. 제안 요지

### 가. 제안 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체계로 확장하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등록, 영향분석, 심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규제혁신 관리체계로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규제의 등록, 공표, 심사, 규제영향분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6조)

-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 규제의 재검토(안 제8조)
- 규제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제14조)
-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안 제15조)

### 3.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광양시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 절차, 등록, 심사, 영향분석, 정비계획 수립, 재검토, 의견 제출 및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법규 등에 행정규제를 신설 또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행정규제를 등록하고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며 만료일 6개월 전 재검토하도록 함.
- 규제의 체계적 관리와 혁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나 조문 체계 및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수정의결(출석위원 6명)

※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 붙임 1.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82-1
----------	--------

제안연월일 : 2025. 12. 04.  
제안자 : 총무위원장

## 1. 수정 이유

- 조문 배열을 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을 변경함.

## 2. 수정 내용

-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제8조제4항 관련)”를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제7조제4항 관련)”로 한다.

##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제8조제4항 관련)”를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제7조제4항 관련)”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조 (생 략)</b> <b>제8조 · 제9조 (생 략)</b></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규제 신설 · 정비 계획서</b> (제8조제4항 관련)</p> <p><small>조례 · 규칙명:</small></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분야</th> <th rowspan="2">규제사무명</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2">중점의 규제 내용</th> <th colspan="2">규제 정비 내용</th> <th rowspan="2">개선 유형</th> <th rowspan="2">사유</th> </tr> <tr> <th>조항</th> <th>규제 사항</th> <th>조항</th> <th>규제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small>※ 작성요령</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 : ① 경제, ② 산업, ③ 관광문화, ④ 도시개발, ⑤ 사회복지, ⑥ 농수축산업, ⑦ 환경, ⑧ 소방방재 ⑨ 기타</li> <li>·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일지,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기입 : 예) 000시설키준, 0000연외제한</li> <li>·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특별법위임조례의 경우에는 특별법 조항 및 관련 법률을 모두 기입</li> <li>· 중점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된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기입</li> <li>· ※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제 사항 기입</li> <li>· 규제 정비 내용 : 중점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항 정비하는 내용 기입. (규제 해당번호는 O, X로 기입)</li> <li>· 개선 유형 : 중점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원형",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li> <li>· 사유 :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제 제정도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지"라고 기입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는 개별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원형", "강화", "인용"만 기입)</li> <li>·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기업경영 제도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행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제정도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알릴 수 있도록 서술</li> </ul>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중점의 규제 내용		규제 정비 내용		개선 유형	사유	조항	규제 사항	조항	규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b>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b> <b>제7조 · 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b></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규제 신설 · 정비 계획서</b> (제7조제4항 관련)</p> <p><small>조례 · 규칙명:</small></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분야</th> <th rowspan="2">규제사무명</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2">중점의 규제 내용</th> <th colspan="2">규제 정비 내용</th> <th rowspan="2">개선 유형</th> <th rowspan="2">사유</th> </tr> <tr> <th>조항</th> <th>규제 사항</th> <th>조항</th> <th>규제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small>※ 작성요령</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 : ① 경제, ② 산업, ③ 관광문화, ④ 도시개발, ⑤ 사회복지, ⑥ 농수축산업, ⑦ 환경, ⑧ 소방방재 ⑨ 기타</li> <li>·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일지,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기입 : 예) 000시설키준, 0000연외제한</li> <li>·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특별법위임조례의 경우에는 특별법 조항 및 관련 법률을 모두 기입</li> <li>· 중점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된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기입</li> <li>· ※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제 사항 기입</li> <li>· 규제 정비 내용 : 중점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규제 해당번호는 O, X로 기입)</li> <li>· 개선 유형 : 중점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원형",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li> <li>· 사유 :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제 제정도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지"라고 기입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는 개별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원형", "강화", "인용"만 기입)</li> <li>·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기업경영 제도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행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제정도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알릴 수 있도록 서술</li> </ul>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중점의 규제 내용		규제 정비 내용		개선 유형	사유	조항	규제 사항	조항	규제 사항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중점의 규제 내용				규제 정비 내용		개선 유형	사유																																
	조항	규제 사항	조항			규제 사항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중점의 규제 내용		규제 정비 내용		개선 유형	사유																																					
			조항	규제 사항	조항	규제 사항																																							

## (전부개정안+수정안)

###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2. “조례등”이란 광양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요청을 해야 한다.

② 규제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시 대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규제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

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광양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시가 관리하는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

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4

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업,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단체(전문가 포함)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임명·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 규제등록요청서(제3조제1항 관련)

① 규제사무명		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		④ 등록 사유	
⑤ 담당부서		⑥ 소관부처	
⑦ 부     문		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	특별법		
	상위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⑩ 공포일		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		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등록요청서 작성 방법

- ①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 ② **규제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 ③ **규제등록일**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 ④ **등록 사유** :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 ⑤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 ⑥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 ⑦ **부문**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

- ⑧ **유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⑨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 ⑩ 공포일 : 관련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 ⑪ 규제시행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 ⑬ 재검토 관련 조항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 ⑭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 예시 : - 2020. 12. 13. 완화 (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별지 제2호서식]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제5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주관부서	일시
심사안건		
제안요지		
관계법령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심사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 ○ (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제5조제4항 관련)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안요지			
심사의결요지			
심사결과	적 정	부 적 정	보 류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규제영향분석서(제6조제1항 관련)

###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등록번호	2. 구 분						
3. 규제사무명	신 설	강 화	완 화	폐 지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5. 근거법령등							
6. 규제 근거의 분류	○ 일반 규제 ( )		○ 개별법 위임 규제 ( )		○ 자치사무 규제 ( )		
	○ 이양에 따른 규제 ( )						
7. 추진배경 및 규제의 필요성							
8. 규제의 내용	기존						
	변경						
9.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10.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미설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설정			
	존속기한·사유	설정 또는 미설정 사유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규제의 순응도
-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피규제자 및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
- 나.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의 영향
- 다. 이해당사자 별 비용(규제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 라.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마.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별지 제5호서식]

## 규제 신설 · 정비 계획서(제7조제4항 관련)

조례 · 규칙명: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종전의 규제 내용		규제 정비 내용			개선 유형	사유
			조항	규제 사항	조항	규제 사항	규제 해당 여부		

※ 작성요령

- 분야: ① 경제, ② 산업, ③ 관광문화, ④ 도시개발, ⑤ 사회복지, ⑥ 농수축산업, ⑦ 환경, ⑧ 소방방재 ⑨ 기타
- 규제사무명: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특별법위임조례의 경우에는 특별법 조항 및 관련 법률을 모두 기입
- 종전의 규제 내용: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 ※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제 사항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 단,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는 개별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완화”, “강화”, “인용”만 기입)
- 사유: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